

2003上水道公企業會計決算承認(案)

| | |
|------|--------------|
| 의안번호 | 2004 - 37 |
|------|--------------|

제출년월일 : 2004.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 받고자 함

2. 주요결산내역

가.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당기수입액) - 11,160,202천원
- 세출결산액(당기지출액) - 8,904,100천원
- 순세계잉여금----- 2,256,102천원

이 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488,507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767,595천원임

나. 지방채 결산

지방채무액은 전년말 17,303,300천원으로 2003년 신규 지방채발행액은 없으며 당해년도 원금상환액 1,820,900천원과 수자원공사 부채이관액 1,068,000천원을 제외하면 2003년말 원금잔액은 14,414,400천원임

다. 가동설비자산

'02년도말 현재액은 34,678,268천원으로 년증가액이 1,150,041천원(구축물 793,416천원, 공기구비품 22,721천원, 기타가동설비자산 333,904천원) 발생되었으며, 감가상각총당금이 1,834,488천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33,993,821천원임

라. 비가동설비자산

'02년도말 광역상수도건설중인자산 1,211,000천원은 전주권통합정수장건설 분담금이며 수도법개정으로 우리시분담금의 수자원공사로 부채이관 및 환불처리 받았음

건설중인자산은 전주권광역수수사업으로 '02년도말 8,809,435천원에서 1,618,727천원 증가하여 '03년도말 현재액은 10,428,162천원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조문

(1)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② 관리자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나. 기 타 ----- 불 임

-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